

변경 대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명칭 변경	참조 지수 변경	모펀드 삭제	환매 지급일 변경
1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1), 2), 3), 4), 5)		○		-
2	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○	○	○	-
3	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	○	-	○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신탁 유형 변경
- 2) 유형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
- 3) 운용역 변경
- 4)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삭제
- 5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6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7) 참조지수 변경
- 8) 모투자신탁 삭제
- 9) 환매 대금 지급일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0년 9월 24일 (목)

4. 변경내용

- 1) 투자신탁 유형 변경
 -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- 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7. 집합 투자기구의 투 자목적	이 투자신탁은 <u>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</u> 하며 일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<u>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</u> <u>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</u>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
제2부.8. 집합 투자기구의 투 자대상	<주식> 투자비율: <u>80% 이하</u>	<주식> 투자비율: <u>60% 이상</u>
제2부.9.가.(1) 투자전략	①~③ <생략> ④ <u>또한,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에 주로</u>	①~③ <좌동> ④ <u><삭제></u>

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(ETF 포함)에 일부 투자합니다. 글로벌채권은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 지역의 투자등급 채권들을 대상으로 하나 투기등급(S&P 기준 BB+ 이하) 채권도 일부 편입할 수 있습니다. ⑤ <생략>	⑤ <좌동>
--	--------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투자신탁 명칭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)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2. 증권(혼합주식형)	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2. 증권(주식)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하로 한다. <이하 생략>	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<좌동>

2) 유형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

-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위험등급>	미래에셋자산운용(주)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<u>주식에 투자하며 일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</u> 위험등급 6등급 중 <u>3등급</u> 에 해당합니다.	미래에셋자산운용(주)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<u>주식에 투자하므로</u> 위험등급 6등급 중 <u>2등급</u> 에 해당합니다.

3)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목대균, 이재일	목대균

4)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삭제

-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	※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후원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합니다)을 조성하여 사용합니다.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	<삭제>

<p>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 - 판매회사보수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 <p>②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위의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 및 봉사단체,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 - 장애인, 극빈층 등 사회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- 불우 어린이 및 청소년 장학사업 - 기타 사회적 나눔 문화 조성 및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 등 	
---	--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의2 (기금의 조성 및 사용)	<p>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한다)을 조성하며,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 2. 판매회사보수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 <p>②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적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 및 봉사단체,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 2. 장애인, 극빈층 등 사회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3. 불우 어린이 및 청소년 장학사업 4. 기타 사회적 나눔 문화 조성 및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 등 	<삭제>

5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-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44 조 (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 3 <생략></p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생략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3 <좌동></p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좌동></p> <p>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
6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-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2호(주식-재간접형)
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

7) 참조지수 변경

-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<p><참조지수></p>	<p><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></p> <p>글로벌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어 아래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합니다.</p> <p>MSCI ACWI ESG Leaders 지수 70% + KIS 종합채권지수 30%</p> <p><MSCI ACWI ESG Leaders 지수> MSCI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주식 중 MSCI ESG Research에 기반한 ESG 성과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</p> <p><KIS종합채권지수> KIS채권평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국내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</p>	<p><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></p> <p>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어 아래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합니다.</p> <p>MSCI ACWI ESG Leaders 지수 100%</p> <p><MSCI ACWI ESG Leaders 지수> MSCI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주식 중 MSCI ESG Research에 기반한 ESG 성과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</p>
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</p> <p>MSCI Emerging Markets Index 100%</p>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</p> <p>MSCI World Index 70% + MSCI EM Index 30%</p>

8) 모투자신탁 삭제

-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</p> 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<u>2.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</p> 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 <p>2.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</p> 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</p> 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1.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
제16조(투자목적)	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></p> <p>이 투자신탁은 <u>해외 주식</u>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></p> <p>이 투자신탁은 <u>동유럽 지역 주식</u>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<p>[모자형구조]</p> 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</p> <p>- <u>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</p>	<p>[모자형구조]</p> 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</p> <p>- <u><삭제></u>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</p>

	<p>자신탁1호(주식)> 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	<p>자신탁1호(주식)> - <삭제></p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 -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 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 - <삭제>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 - <삭제></p>
제2부. 9. 가. (1)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 ①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및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 ① 이 투자신탁은 “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”, “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”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 ①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<삭제>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 ① 이 투자신탁은 “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”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 -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 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	<p><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> - <삭제></p> <p><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> - <삭제></p>

9) 환매 대금 지급일 변경

-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7조(환매가 격 및 환매방 법)	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28조(환매연 기)	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1. 나. 환매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